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8.(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6. 8. 24. (의안번호 : 26-95)

2. 제안이유

○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마포구 대표 구립도서관으로서 총괄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의 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미래교육국 분장사무에서 도서관 운영 관련 사무를 조정 (안 제7조)

○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위치를 규정(안 제15조)

○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안 제16조)

○ 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章) 및 조문 번호를 정비
(안 제4장, 제17조부터 제20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제127조(사업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6. 8. 6. ~ 8. 12.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마포구 대표 구립도서관으로서 총괄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존 “담당관·과장”에 “사업소의 장”을 추가하여 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체계를 정비함.
○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사무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함.
○ 안 제4장에서는 “사업소”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기존 장 및 조문 번호를 이에 맞게 조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로 규정함.

○ 안 제16조에서는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

□ 행정기구

구 분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사업소	동	정원)
개편 전 (26.8.14.기준)	7국 2담당관 37과 **159팀**	1소 4과 18팀	1사무국 5팀	-	16동 50팀	**1,479명**
개편 후 (27.1.1.시행)	7국 2담당관 37과 **158팀**	(변동 없음)	(변동 없음)	**1사업소 3팀**	(변동 없음)	**1,482명**
증 감	△1	-	-	+1사업소 3팀	-	+3명

□ 사업소 사무분장 확정 및 부서장 직렬·직급 명시

개편 전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편 후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팀 재편) 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팀 재편

(개편 전)

본 청
평생학습과(4팀)
평생교육팀
도서관정책팀
도서관운영팀
소금나루분관팀

⇨

(개편 후)

본 청	사업소
평생학습과(3팀)	마포중앙도서관(3팀)
평생교육정책팀	도서관정책팀
평생학습운영팀	도서관운영팀
평생학습지원팀	소금나루분관팀

3 법적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관장을 두는 것 자체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운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본 개정안의 입법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마포중앙도서관을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한 도서 대출·열람에서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의 교육·문화공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사업소 체계를 통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검토 및 유의사항

○ 마포중앙도서관의 사업소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조직체계와 업무분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기존 부서와 사업소 간 업무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생교육 관련 업무와 도서관의 평생학습·문화교육 프로그램 간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본청과 마포중앙도서관 간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소 신설에 따라 관장 및 소속 직원의 정원·직급, 인건비 등 조직운영 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와의 연계 여부 및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근거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책임성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독립적인 사업소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교육·문화·평생학습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민의 독서 증진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소 전환에 따른 인력·예산·업무분장 및 조직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

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

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